

대구광역시 달성군 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464
----------	------

제출일자 : 2024. 3. 11.

제 출 자 : 달성군수



1. 제안이유

조례 제목 및 내용에 기재된 “리장”명칭을 “이장”으로 표기함으로써 명칭 사용을 다른 법령에 맞게 통일감있게 변경하고, 조례 내용을 명시적으로 표기하고자 하며, 또한 법인 및 단체의 명확한 보조금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목 및 내용 중 “리장” 명칭을 “이장”으로 변경

(안 제1조, 제2조제1항, 제2조제2항, 제3조제1항, 제3조제2항, 제3조제3항, 제3조제4항, 제4조제1항, 제4조제2항, 제5조)

나. 이장의 사기진작 및 능력개발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가능한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의 명확한 근거 추가(안 제6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1)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제1항

(2)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기타

- (1)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참조
- (2) 입법예고(2024. 2. 2. ~ 2. 22.) 결과 : 의견 없음
- (3)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 (5) 부패영향평가 : 특기할 사항 없음
- (6) 부서합의 : 해당사항 없음
- (7)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대구광역시 달성군 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를 “대구광역시 달성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리장”을 “이장”으로 하고, 제2조의 제목 중 “리장”을 “이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이장은 자신의 주민등록 및 거주 리구역에서의 대구광역시 달성군 관할 읍·면장의 업무 중 일부를 돕는 기능을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리장”을 “이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리장”을 “이장”으로 하고, “발전율”을 “소속 리지역의 발전율”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이장은 제2조제2항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할 때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및 관할 읍·면장의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며, 그 임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리장”을 각각 “이장”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리장”을 “이장”으로 하고, “소요되는”을 “드는”으로 하며, “범위안”을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리장”을 “이장”으로 하고, “범위안”을 “범위”로 한다.

제5조 중 “리장”을 “이장”으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사기진작) ① 군수는 이장의 사기진작 및 능력개발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상해보험 가입
2. 모범이장의 선발·표창
3. 국내외 연수
4. 교육훈련
5. 체육행사
6. 그 밖에 군수가 이장의 사기진작 및 능력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가 지원 요청을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 수행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보조하는 경우 그 보조금의 지급 절차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을 따르거나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리장의 임무와 복무 및 이에 따른 실비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2조(리장의 임무) ① <u>리장은 리구역안에서의 업무중 그 일부를 도와주는 기능을 담당한다.</u></p> <p>② <u>리장은 리를 대표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u> 1.~3. (생략) 4. <u>기타 지역주민의 편의 증진과 봉사</u></p> <p>제3조(복무) ① <u>리장은 법규를 지키고 임무에 성실하여야 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발전을 선도하여야 한다.</u></p> <p>② <u>리장은 제2조제1항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면 이를 위해 알게 된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u></p>	<p>제1조(목적) ----- <u>이장의</u> ----- ----- -----.</p> <p>제2조(<u>이장의 임무</u>) ① <u>이장은 자신의 주민등록 및 거주 리구역에서의 대구광역시 달성군 관할 읍·면장의 업무 중 일부를 돕는 기능을 한다.</u></p> <p>② <u>이장은</u> ----- -----. 1.~3. (현행과 같음) 4. <u>그 밖에</u> ----- ---</p> <p>제3조(복무) ① <u>이장은</u> ----- ----- -----<u>소속 리지역의 발전을</u>-----.</p> <p>② <u>이장은 제2조제2항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할 때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및 관할 읍·면장의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며, 그 임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u></p>

③ 리장은 질병 또는 타지역 출타 등으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읍·면장에 보고하고 그 직무의 대행자를 미리 지정 받아야 한다.

④ 리장이 경질되었을 때에는 전임자는 10일이내에 사무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리담당공무원 입회하에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3부를 작성하여 읍·면장 인수자 인계자가 각 1부씩 보관한다.

제4조(실비변상) ① 리장에게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읍·면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리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편의제공) 리장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을 면제받을 수 있으며 읍·면의 공부나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 등 임무수행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③ 이장은 -----

-----.

④ 이장이 -----

-----.

제4조(실비변상) ① 이장에게 -----
-----드는-----
-----범위-----

-----.

② 이장에게는 ----- 범위-----
-----.

제5조(편의제공) 이장은 -----

-----.

제6조(사기진작) 리장의 사기진작 및 능력개발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해보험 가입, 모범리장의 선발표창, 국내외 연수, 교육훈련, 체육행사 등을 실시하거나 개최할 수 있다.

제6조(사기진작) ① 군수는 이장의 사기진작 및 능력개발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상해보험 가입
2. 모범이장의 선발표창
3. 국내외 연수
4. 교육훈련
5. 체육행사
6. 그 밖에 군수가 이장의 사기진작 및 능력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가 지원요청을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 수행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보조하는 경우 그 보조금의 지급 절차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을 따르거나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이장 및 통장의 임명) ①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행정동의 통에는 통장을 두고, 법 제7조제6항에 따른 읍·면의 행정리에는 이장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장 및 통장은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장·면장·동장이 임명한다.

③ 읍장·면장·동장이 제2항에 따라 이장 및 통장을 임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지방보조금의 예산 편성 및 운영)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 이 경우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경비의 종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